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로표지용 신규 선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9일 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1. ~ 7.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항 중 “2024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929”를 “2,935”로 하고, 일반직 계 “2,818”을 “2,8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95”를 “2,801”로 한다.

별표 5 제6호 중 “2024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제55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⑧ 삭제	
⑨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8월 9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⑨ ----- ----- ----- ----- -- <u>2025년 8월 9일</u> ----- ----- -----.
⑩ ~ ⑬ (생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29</u>	<u>2,935</u>	+6
·	·	·	
·	·	·	
일반직 계	<u>2,818</u>	<u>2,824</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95</u>	<u>2,801</u>	+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